| 일본

교직원에 의한 아동 성폭력 등의 방지에 관한 법률

김태은 해외통신원(도쿄대학교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교직원에 의한 아동 성폭력 등의 방지에 관한 법률[1]」의 도입배경

아동 성범죄 행위를 범해 징계, 면직을 받는 교직원이 끊이지 않고,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 중에 교사라는 권위와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 아동에게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생에 대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일부 교직원들의 가해 행위에 의해 아동, 학생의 심신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태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제204회 국회에서 동 법률이 제출되었으며 성립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교직원에 의한 모든 아동 성범죄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이와 더불어 교직원에 의한 아동 성범죄 방지에 관한 종합적인 규정이 처음으로 정비되었다.

「교직원에 의한 아동 성폭력 등의 방지에 관한 법률」의 개요

「교직원에 의한 아동 성폭력 등의 방지에 관한 법률 (레이와 3년 법률 제57호)」은 아동의 존엄성을 위해 교직원 등에 의한 아동 성폭력의 방지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아동의 권리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정의와 교직원에 의한 아동 성폭력의 금지,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에 의한 아동 성폭력의 근절이라는 기본이념, 문부과학대신에 의한 기본적인 방침의 작성, 아동 성폭력의 방지 및 조기 발견·대처에 관한 조치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의 정비, 특정 면허증 실효자에 대한 면허증 수여의 특례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일부 규정[2]을 제외하고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에 사용된 용어의 구체적인 정의는 〈표1〉과 같다.

1) 정확한 일본어 명칭으로는 「教育職員等による児童生徒性暴力等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로 한국어로 하면 '교직원 등에 의한 아동학생 성폭력 등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2) 데이터 베이스의 규정은, 법의 공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행예정

〈표 1〉 법률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아동학생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유아, 아동, 학생, 18세 미만인 자
교육직원 등	교육직원, 교장(원장), 부교장(부원장), 교감, 실습조수, 기숙사 지도원
특정 면허증 실효자	아동 학생 성폭력 등의 범죄 이력에 의해 교원 면허증이 실효되거나 면허증의 면직 처분을 받은 자
아동학생 성폭력 등	• 아동학생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강제하는 것 • 아동학생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강제하는 것 • 아동 포르노법 위반 • 치한 행위 또는 불법 촬영 • 아동학생에 대한 악질적인 성추행 •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며, 아동학생의 동의나 폭행, 협박 등에 유무는 묻지 않는다.

출처: https://www.mext.go.jp/content/20210702-mxt_kyoikujinzai01-100000009_3.pdf (검색일: 2022.11.11)

이 법률에서는 성범죄 방지에 대한 조치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각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치, 둘째, 성범죄 조기발견 대처에 관한 조치, 셋째, 교직원 면허법의 특례에 관한 조치이다. 법의 시행 후 3년을 기준으로 법의 시행 상황에 관해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치

성범죄 방지에 관해서는 ①교직원과 아동·학생 등에 대한 인식 계몽, ②특정 면허증 실효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③아동·학생 성폭력 대책 협의가 있다.

먼저, 교직원과 아동 학생 등에 대한 인식 계몽의 내용으로는 교직원과 양성과정의 이수 학생에게 인식 계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아동·학생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인식을 계몽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다음으로, 특정 면허증 실효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의한 데이터 정비를 실시한다. 그리고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면허관리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특정 면허 실효자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신속하게 기록하며 적어도 40년간 분의 기록을 축적한다. 또한 법의 시행일보다 전에 아동 성범죄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여 면허증이 실효된 자에 관한 정보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한다.

이를 통해 교직원을 임명할 수 있는 교직원 임명권자에게는 교직원을 임명하거나 고용을 하는 상황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교직원 임명권자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학생 성폭력 대책 협의회에서는 관계 기관들의 상호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 교육위원회, 도도부현의 경찰을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한다.

성범죄 조기발견·대처에 관한 조치

성범죄 조기 발견·대처에 관한 조치에는 ①조기 발견을 위한 장치, ②아동 학생 성폭력에 대한 장치, ③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아동·학생의 보호 및 지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조기 발견을 위한 장치로서는 학교에 정기적인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며 상담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스쿨 카운셀러, 스쿨 소셜워커 등을 활용한 교육 상담체제를 정비한다.

아동·학생 성폭력에 대한 장치로서는 각 연계기관의 정보공유와 통보이다. 상담을 받은 아동이나 학생은 학교 및 학교의 담당처에 통보하며 만약 범죄에 노출되었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통보한다. 또한 학교는 통보가 있을 경우 학교의 담당처에 통보한다. 만약 이 때 범죄로 인정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여 연계를 한다. 보고를 받은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학교, 학교의 설립운영자, 관할 경찰서의 정보공유와 신속한 대처를 목표로 한다.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초기 단계부터 대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한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징계 처분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아동·학생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는 교직원 이외의 학교에서 학생들과 접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 및 종사자에 관해서도 아동학생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아동·학생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 및 아동·학생에게 성적인 피해를 입힌 자의 신분조회제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의 검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교직원 면허법의 특례에 관한 조치

교직원 면허법 특례에 관한 조치 내용으로는 ①특정 면허증 실효자에 대한 재수여, ②도도부현 교직원 면허증 재수여 심사회 설치가 있다.

특정 면허증 실효자에 대한 재수여는 아동 성범죄의 내용이 원인이 되어 면허증을 실효한 자에게 있어서 아동 성범죄 내용을 검토를 통해 개선을 하거나 갱생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재수여가 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의 수여권자가 면허증을 재수여 하는 것이 가능하다.

재수여를 할 경우에는, 미리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면허증 재수여 심사회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도도부현 교직원 면허증 재수여 심사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심사회는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에 설치한다.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문부과학성의 법령에 의해 규정한다.

참고자료

- https://www.mext.go.jp/a_menu/shotou/kyoin/mext_01584.html (검색일: 2022.11.12.)
- https://www.mext.go.jp/a_menu/shotou/kyoin/mext_00001.html (검색일: 2022.11.12.)